교육부

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(안)

(3~5세 5만원 추가지원 포함)

2026. 1.

교 육 부

(영 유 아 정 책 국)

차 례

Ⅰ. 사업 개요 ····· 1

Ⅱ.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····· 4

1. 유아학비 지원 ····· 4

2. 방과후 과정비 지원 ····· 9

Ⅲ.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····· 11

Ⅳ. 3~5세 5만원 추가지원 ····· 13

Ⅴ. 행정(협조) 사항 ····· 15

[붙임 1] 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 ····· 18

[붙임 2] 질병 결석 신고서 양식 ····· 20

[붙임 3] 저소득층 유아 학비 신청 안내(예시) ····· 21

[붙임 4]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개인정보보호방침 안내 ····· 22

[붙임 5] 유아학비 지원 신청 양식 ····· 23

[붙임 6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 안내 ····· 26

Ⅰ. 사업 개요
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○ **(유아학비) 3~5세 누리과정 도입**으로 유치원·어린이집에 **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(누리과정)**을 **적용**함에 따라, 보호자의 **소득수준**에 **관계 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·보육료 지원**

○ **(저소득층 지원) 사립유치원**에 다니는 **저소득층 가정 유아**에 대해서는 **추가 학비 지원**을 통해 **실질적 교육기회 보장**

※ 국·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 입학 기회 보장

○ **(유아학비·보육료 추가지원)** 「**유보통합 추진계획**('23.1.30.)」에 따라 **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**을 위해 유아학비·보육료 **단계적*** **추가 지원**

* 지원대상 : 5세('24년) → 4~5세('25년) → 3~5세('26년)

□ 2026년 지원내용

(단위 : 원)

구분	(유치원) 유아학비 (어린이집) 보육료	(유치원) 방과후 과정비 (어린이집) 누리운영비	(유치원·어린이집) 유아학비·보육료 5만원 추가지원	총 지원금
국·공립 유치원	100,000	50,000	50,000	200,000
사립유치원 (어린이집)	280,000	70,000	50,000	400,000

※ 위 유아학비·방과후 과정비 외에 소득요건 등 조건에 따라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(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)

□ 세부 지원내용 ('26.3.1.부터 적용)

○ 유아학비 및 보육료, 방과후 과정비 지원

구분	지원연령	생년월일	지원액(원/월)		
			국·공립 유치원	사립 유치원	어린이집
유아학비 (유치원) **보육료** (어린이집)	5세	2020.1.1.~2020.12.31.	100,000	280,000	280,000
	4세	2021.1.1.~2021.12.31.			
	3세	2022.1.1.~2023.2.28.			
방과후 과정비	3~5세	2020.1.1.~2023.2.28.	50,000	70,000	70,000

※ 2026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(1월 예정)

*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에 의한 미숙아인 경우, 생후 연령에서 조기출생 기간을 제외한 교정연령을 기준으로 입학 및 재원 가능

○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
구분	자격	지원액(원/월)	비고
저소득층 유아 학비지원	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※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	월 최대 200,000	• 학부모부담금(입학경비+교육과정비+방과후 과정비(특성화 교육활동비 포함)+기타경비) • 학부모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
○ 유아학비·보육료 5만원 추가지원

구분	지원연령	생년월일	지원액(원/월)		
			국·공립 유치원	사립 유치원	어린이집
유아학비 (유치원) **보육료** (어린이집)	3~5세	2020.1.1.~2023.2.28.	50,000	50,000	50,000

※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」[별표1] 비고19에 따른 '26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외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

□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

❖ 2026년 유아학비 지원 시스템 운영 방안 ❖

- (**국·공립유치원**) 유아 나이스 시스템 사용
- (**사립유치원**) 유아 나이스 시스템 또는 e-유치원 시스템 선택 사용 가능

※ 단, 최초 시스템 선택 후에는 학년도 종료 시('27.2월 말)까지 사용 시스템 변경 불가

○ **(신청방법)**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**주민센터 방문** 또는 **온라인**(복지로: www.bokjiro.go.kr)을 통해 **신청**

구분	방문신청	온라인신청
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	**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** 방문 신청	복지로 (www.bokjiro.go.kr)

○ **(지원금 지급)** 학부모 인증·신청에 따라 **교육청→유치원 입금**

- **(유아학비·방과후 과정비) 학부모 인증**을 거쳐 **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**

❖ 유아학비·방과후 과정비 지급 관련 유의사항 ❖

- '**유아학비지원시스템**' **청구** 및 **정산**은 **분기별로 한 번씩** 실시
- 시도별 재정여건, 유아학비 지원 자격 정보 연계('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' → '유아학비지원시스템(e-유치원)' 지연, 유치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**지원 시기 등**이 **변경**될 수 있음
- '**유아학비지원시스템**' **정산 결과**와 **실제 유아학비 지원액**이 **일치**해야 함

- **(저소득층 유아 학비)**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,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을 **별도 신청**한 경우 **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**

□ 지원기간

○ **3세 이상 유아**로서, **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** 간 지원 가능

○ **「유아교육법」 제24조** 및 **같은 법 시행령 제29조**에 따라 지원 기간은 **3년***을 **초과할 수 없고,** 초과 시 **'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'**에서 **자격 중단**

* '13.3.1. 이후 지원 이력부터 적용(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제29조제1항)

Ⅱ.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

1. 유아학비

□ 지원대상 및 기간

○ **(지원대상)** 국·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**3~5세 유아**

- **'23년 1~2월생**으로 **3세반**에 **취학**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

※ '23년 1~2월 생으로 3세반에 취학한 유아의 지원기간도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
- 취학대상 아동('19.1.1.~'19.12.31. 출생)이 **취학**을 **유예**하는 경우, **총 3년**의 **지원기간**을 **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**에서 유예한 **1년**에 한해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**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**

※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

❖ 지원제외 ❖
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(난민 및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'특별기여자 등'은 예외로 함)
-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
-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
- 유치원에 학적은 있으나 휴학으로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한 경우
- **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**

※ 해외 체류 기간 기산 시 출국일 포함

[예시] 3월 1일 출국하여 4월 7일 귀국한 A아동의 자격은 3월 31일부터 중지 (3월 30일까지 지원 자격 보유)

☞ **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**
→ 반드시 학부모 사전 안내 조치
(재신청 누락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유아학비는 소급지원 불가)

○ **(지원 기간)** 유치원·어린이집에서 **공통 교육과정**(누리과정)을 **제공받는 유아**에 대한 **지원기간**은 **3년***을 **초과할 수 없음**

- **3년 초과 유아**는 '**사회보장정보시스템**(행복e음)'에서 **자격 중단 처리**

※ **'23.1.~2월생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** 또는 **어린이집에 입소**한 경우, 사전에 **무상교육 기간(3년)** 지원 및 지원 기간 초과시 **보호자 자부담 발생** 할 있음을 반드시 안내

* '13.3.1. 이후 지원 이력부터 적용(「유아교육법」 제24조 및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)

□ 지원기준

○ **(신규 신청)** 보호자의 비용 지원 **신청일 기준**으로 지급

※ 신청일보다 **입학일**이 **늦어지는 경우**, **입학일**을 **신청일로 봄**

○ **'유아학비 ↔ 보육료' 간 변경**(일할계산)

변경 구분	지원 기준
보육료 → 유아학비	유아학비 신청 후 입학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(입학일보다 신청일이 늦을 경우,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)
유아학비 → 보육료	보육료 신청 전일까지 유아학비 일할 계산하여 지급

○ **'유아학비 ↔ 양육수당' 간 변경**

① **'양육수당 → 유아학비'**로 변경하는 경우(15일 기준으로 계산)

변경 기준		지원 기준
변경 신청일	15일 이내	① 양육수당 : 해당 월 미지원 ② 유아학비 :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(입학일이 신청일보다 늦은 경우 입학일을 변경신청일로 봄)
	16일 이후	① 양육수당 :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② 유아학비 : 익월 1일부터 지원

② **'유아학비 → 양육수당'**으로 변경하는 경우(15일 기준으로 계산)

변경 기준		지원 기준
변경 신청일	15일 이내	① 유아학비 : 해당 월 미지원 ② 양육수당 : 해당 월 전액 지원
	16일 이후	① 유아학비 : 변경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② 양육수당 : 해당 월 미지원(익월 1일부터 지원) ※ 유아가 유치원에 학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 할 경우 유아학비 일부가 미지급(학부모 자부담 발생)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학적 중단 후 변경 신청하도록 학부모에게 안내

☞ **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**(2026년 보육사업안내 p.277)

- 보육료·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

※ 단, 보육료·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,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,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.재학(학적유지) 중인 경우는 제외

□ 지원금 산정

공통 기준

❖ 유아학비는 **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**하되, 세부 사항은 아래 세부 기준을 따름**(소급지원 불가*)**

*「유아교육법 시행규칙」 제4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비용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

❖ 본 계획의 '**교육일수***'는 지원금 산정 시 적용되는 개념으로써, 「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」의 '**수업일수****'**와 다름**

* <유아학비 지원계획>에 따라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

**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 출석해야 하는 총 일수(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관련)

○ 산정기간은 **매월 1일부터 말일**까지로 하되, ①~③에 의해 산정

❖ 휴일에 대한 교육인정일 산정 기준 ❖

※ "휴일"은 관공서의 공휴일, 토요일, 재량휴업일을 의미함. 단, 휴일 중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라 수업일수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(예 : 토요일에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평일과 동일하게 봄)

■ **휴일 전·후 출석여부에 따라 휴일에 대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**

⇒ 휴일의 전후 모두 결석일 경우 휴일을 교육일수로 미인정

⇒ 휴일의 전후 중 하루라도 평일 출석 시,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

※ 휴일 전후 교육일수 인정 특례에 따라 '출석인정결석'이 되는 경우에도 휴일은 교육일수로 인정 가능(예: 휴일 전날 출석인정결석 + 휴일 다음날 결석인 경우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, 휴일 전후 모두 출석인정결석인 경우 휴일 교육일수 인정)

※ 감염병 위기경보 '심각'단계인 경우 휴일 전후 평일 출석과 관계없이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

■ **월의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, 첫 번째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**
월의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, 마지막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

■ **중도 입학·학적변동 유아의 경우, 유아학비시스템상 입학·학적변동은 주말로 설정 불가**
(월초·월말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,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유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말 설정 가능)

※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유아학비지원시스템(유아나이스, e-유치원)상 자동으로 입학/학적변동일 혹은 교육일수 조정

① **(입학 시) 입학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** 산정(일할계산)하되, **자격 신청일**을 **고려**하여 결정

- 유아학비 자격을 **3월 1일까지 신청**하고, 유치원 **개학일**부터 **신규 입학한 유아**의 경우, **입학일**을 **3월 1일**로 적용하여 산정

※ 단, 유치원 개학일이 3월 15일 이후일 경우에는 개학일부터 지원금 산정

- **입학일**보다 **자격 신청일**이 **늦은 경우, "자격 신청일"**을 **입학일**로 봄

- **개학일 이후 중간 입학**한 경우, **실제 입학일 기준**으로 산정

❖ 입학에 따른 교육일수 산정 예시 ❖

유치원 개학일	유아 입학일	자격 신청일	지원 시작일	
3월 3일	3월 3일	3월 1일	3월 1일	**(입학1)**
	3월 3일	3월 3일	3월 3일	**(입학2)**
	3월 16일	3월 18일	3월 18일	**(입학3)**
3월 24일	3월 24일	3월 1일	3월 24일	**(입학4)**

입학1) 3월 1일까지 자격을 신청하고, 개학일(3월 3일)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3월 지원액 ⇒ 280,000원(입학일 3월 1일 적용)

입학2) 3월 3일까지 자격을 신청하고, 개학일(3월 3일)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3월 지원액 ⇒ 280,000원 × 29(교육일수) / 31(해당월의 일수) = 261,935원 (입학일 3월 3일 적용)

입학3) 3월 16일에 입학하고 **자격 신청일이 늦은 경우**, 유아의 3월 지원액 ⇒ 280,000원 × 14(교육일수) / 31(해당월의 일수) = 126,450원

입학4) 3월 1일까지 자격을 신청하고, 개학일(3월 24일)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3월 지원액 ⇒ 280,000원 × 8(교육일수) / 31(해당월의 일수) = 72,258원

② **(학기 중)** 유아의 **월 교육일수**가 **15일 이상**일 경우 **전액 지원** 및 **결석**으로 교육일수 **15일 미만**인 경우에는 **일할 계산**

(단, **'붙임 1**(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)'의 기준에 **부합**하는 경우 **교육일수**로 **인정**)

※ 학부모 부담 유치원 수업료는 '결석'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음

- 방학 중 지원금 산정 시, **국·공립유치원**은 **학기 중**과 **동일**하게 적용하고 **사립유치원**은 방학기간을 **교육일수로 인정**

※ 국·공립 유치원의 경우 '방학 중 방과후 과정 신청 유아'에 대해서는 방학 기간에 유아가 방과후 과정 정상 출결 시, 해당 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 가능

❖ 원비 산정예시 ❖

(학기) 3월 18일~4월 17일까지 결석한 유아의 3~4월 유아학비 지원액
⇒ 3월 지원액 : 280,000원 전액(교육일수 15일 이상)
⇒ 4월 지원액 : 280,000원 ×13(교육일수)/30(해당월의 일수) = 121,330원

(방학) 8월 4일~8월 25일까지 방학기간인 유아의 8월 유아학비 지원액
⇒ (국·공립) 지원액 : 100,000원 × 9(교육일수) / 31(해당월의 일수) = 29,030원
⇒ (국·공립 방학 기간 모두 방과후 신청+출석한 유아) 100,000(방학기간 중 교육일수 인정)
⇒ (사립) 280,000원(방학기간 중 교육일수 인정)

③ **(학적중단 시) 학적변동 달의 1일부터 퇴원일까지** 산정(일할계산)

- 단, 유치원 연간 **학사일정에 따른 졸업 시**(5세반), **학기 중**과 **동일**하게 교육일수 산정

※ **휴학**도 학적중단 시 적용되는 유아학비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산정

❖ 학적중단시 학부모 안내 철저 ❖

▶ 유치원 학적중단(자퇴, 퇴학, 수료 및 졸업 후 가정양육 전환) 전에 자격 변경 신청 시 **신청 일자**부터 **유아학비 지원 자격**이 **중지**되어 유아학비 지원이 불가함

▶ **유치원 학적중단**이 **완료**된 이후 **타 서비스(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등)로 자격 변경**을 **별도 신청**(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지자체 방문 신청)하도록 **학부모**에게 **안내 철저**

(신청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부담비용 및 급여미지급분 등은 소급지원이 불가함을 안내)

❖ 학적중단 시 산정예시 ❖

(예1)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 중이며, 6월 25일에 **학적 중단**한 유아의 지원액
⇒ 지원액 : 280,000원 × 25(교육일수) / 30(해당 월의 일수) = 233,330원

(예2) 2월 19일에 **졸업**한 유아의 2월 지원액 ⇒ 280,000원(교육일수 15일 이상일 경우)

□ 지원항목

○ **입학금, 수업료, 급식비** 및 **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**

※ 유아학비(교육과정비)에서 방과후 과정비 지급 불가가 원칙이나, 방과후 과정의 교재·교구비와 간식비에 대해서는 유아학비 잔액으로 집행 가능(유치원 지도·점검 시 확인)

※ 시스템 상 급식비는 기타교육비에 포함하여 지원금 산정

□ 지원방법 및 절차

○ **(신청)** 유아의 보호자가 **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**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**온라인 신청**(복지로, http://www.bokjiro.go.kr)

※ '25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이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'26년 유아학비 지원 가능

❖ 유의 사항 ❖

▶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(보육료, 양육수당 등)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**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**해야 지원이 가능하고, **지원금**은 **신청일**로부터 **산정**되며 **신청누락**으로 인해 **발생**하는 **유아학비**는 **소급지원 불가**

○ **(자격결정)** 대상자의 출생 연·월·일 및 신청자를 확인하고 **소득·재산 조사 없이 지원 자격 생성** (지자체 담당 공무원)

○ **(인증)** 유아 보호자의 **은행권 카드***를 통한 지원 **대상자 인증**

* '국민행복카드', '아이행복카드', '아이즐거운카드(현금카드 사용 불가), 아이사랑카드'

○ **(청구)** **분기별 '유아학비지원시스템'**을 통해 **지원 금액 신청**(3·6·9·12월) (유치원)

* 신학기 유치원 학적 변동(입학 등)이 많은 관계로 4월에 추가 청구(1회) 실시

○ **(지원)** 유치원 **청구내역 확인·승인** 및 **지원금 입금** (시도교육청)

○ **(출결관리)** 유치원에 재원 중인 **모든 유아**에 대한 **출결 상황** 등을 '유아학비지원시스템'**으로 관리*** (유치원)

* 유치원은 매일 유아의 출결상황을 '유아학비지원시스템'으로 관리하고, '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'에서 미연동(자격 미신청)되는 유아의 경우 반드시 학부모에게 자격 신청 안내

○ **(정산)** 유아별 **입학·학적변동** 및 **출결상황 등**을 **반영**하여 **매분기 '유아학비지원시스템'**에서 **정산**(6·9·12월 및 다음연도 2월) (유치원)

* 유아의 실제 출결상황과 '유아학비지원시스템' 상 출결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

2. 방과후 과정비

□ 지원대상

○ **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**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**'방과후 과정***'**을 **이용**하는 **유아**(유아교육법 제12조·제13조)

*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(법 제2조)

□ 지원기준

○ **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**가 **방과후 과정**을 **이용**하고 교육과정 포함 **1일 8시간 이상**의 **교육**을 **받을 경우 지급**

※ 방과후 과정비 전액지원을 위한 월 최소 출석일수(15일) 및 15일 미출석 시 일할 계산 방법은 유아학비 산정기준과 동일

- 단, **보호자**의 **개별 요청***에 따라 총 운영시간(8시간 기준) 중 **방과후 과정 이용 시간 2시간 이내 조정**** 시, **방과후 과정비 지급 가능**

* 병원 진료 등에 따른 교육과정 지각 또는 방과후 과정 조기 하원 등

** (예시) ①교육과정(5시간)+방과후 과정(3시간) : 방과후 과정 1시간 이상 참여,
②교육과정(4시간 30분)+방과후 과정(3시간 30분) : 방과후 과정 1시간 30분 이상 참여,
③교육과정(4시간)+방과후 과정(4시간) : 방과후 과정 2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

❖ 유의사항 ❖

- 시간 조정 유아가 발생하는 경우, 유아 수시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정적 교육과정·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사전에 일정한 등·하원 시간을 마련하여 운영
- 학부모 동의없이 유치원별 일괄 운영시간 단축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, 유치원 운영(개방) 시간은 학부모 의견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결정(특히, 부모의 출·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여 19시 30분 이후까지 연장 운영 적극 권장)

○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가 **일일 기준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**

※ 단, 재량휴업일·방학 기간·졸업 이후 교육과정 시간(09:00~14:00)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비가 지원되고, 이는 해당 방과후 과정비로 사용 가능하며, 기준시간 미충족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징수 불가

○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해 **방과후 과정 출석부, 참여 신청서 등 증빙 서류 구비 필수**

□ 지원금 산정 방법 및 지원 내용

○ **(산정 방법)**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방법과 동일

○ **(지원 내용)** 인건비, 교재·교구비 및 그 밖의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

Ⅲ.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

□ 지원대상

○ **유아학비 지원 자격***을 충족하면서 **사립유치원**에 다니는 **법정 저소득층**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) **유아**

* '23년 1~2월생 입학한 유아 및 취학 유예 등 그밖의 지원 대상 포함

【 법정 저소득층 유형 및 기준 】

구분	기준
기초생활 수급자	**유아학비 지원 자격**이 있는 **유아** 또는 **유아의 보호자**로서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**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**을 **보유**한 경우
차상위 계층	**유아학비 지원 자격**이 있는 **유아** 또는 **유아의 보호자**로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**차상위 대상 자격**(차상위 자활 대상자,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, 차상위 장애인,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)을 **보유**한 경우
한부모 가정	**유아학비 지원 자격 유아**가「**한부모가족지원법**」에 따른 **보호대상자**로 **선정**된 **한부모 가정 아동**인 경우

○ **지원 연령 및 기간, 보육료·양육수당으로 전환 시 지원, 지원 제외 대상 등**은 기존 **유아학비 기준**과 **동일**(p.2~5 참조)

❖ 유의사항 ❖

-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(보육료, 양육수당 등)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, **반드시 유아학비** 및 **저소득층 유아학비**로 **변경 신청**해야 지원 가능
-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**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**을 위해서는 **별도**로 **반드시 신청**해야 **지원 가능**(미신청으로 누락된 기간 **소급지원 불가**)
- 다만, **'25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**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**'26년**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**지원 자격**이 **유지**되나, **저소득층 수급 자격**(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 계층·한부모 가정)에 **변동**이 있을 경우 **지원**이 **중단**될 수 있음

□ 지원 금액 및 산정방식

○ **월 최대 20만원 [학부모부담금 : 입학경비+교육과정비+방과후 과정비(특성화 교육활동비 포함)+기타경비]**

○ 유치원 원비에 대한 추가 **학부모 부담금**이 **20만원 미만**인 경우 **실비 범위 내**에서 지원

- **보호자**의 **자격 신청일**을 **기준**으로 지원하고**(소급지원 불가)**, **지원금 산정**은 **유아학비**와 **동일**하게 **'교육일수'**에 따름(P.6~8 참조)

□ 지원절차

○ **(보호자 신청) 유아의 보호자**로서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**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**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**온라인 신청**(복지로, http://www.bokjiro.go.kr)

❖ 구비서류 ❖

- **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** [붙임5]
- 신청자 **신분 확인**을 위한 **신분증 등**
- (필요시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[붙임6]

○ **(자격확인) '유아학비지원시스템'-'사회보장정보시스템**(행복e음)' 연계

※ 신청자, 지원 대상 유아의 출생 연·월·일,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 여부(국민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 계층·한부모 가정 해당 여부) 등 확인 후 지원

○ **(청구)** 분기별 '유아학비지원시스템'을 통해 **지원 금액 신청**(3·6·9·12월) (유치원)

○ **(지원)** 유치원 **청구내역 확인·승인** 및 **지원금 입금** (시도교육청)

○ **(출결관리)** 유치원에 재원 중인 **모든 유아**의 **출결 상황** 등을 '유아학비지원시스템'**으로 관리*** (유아학비와 동일)

* 유아의 실제 출결상황과 '유아학비지원시스템' 상 출결 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

○ **(정산)** 유아별 **입학·퇴원 및 출결상황 등**을 **반영**하여 분기별 '유아학비지원시스템'에서 정산(6·9·12월 및 다음연도 2월) (유치원)

Ⅳ. 유아학비·보육료 5만원 추가지원

□ 지원 개요

○ **(지원대상)** ’26년 유아학비·보육료 지원 대상과 동일

※ 유치원·어린이집에 다니는 3~5세(’20.1.1. ~’23.2.28. 출생) 유아

- 취학대상 아동(’19.1.1.~12.31. 출생)이 **취학**을 **유예**하는 경우, 유예한 **1년**에 한하여 유아학비·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**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**

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
※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

○ **(지원금액)** 유아 1인당 **월 50,000원**

○ **지원항목**

- **(유아학비) 입학금, 수업료, 급식비** 및 **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**

※ 유아학비(교육과정비)에서 방과후 과정비 지급 불가가 원칙이나, 방과후 과정의 교재·교구비와 간식비에 대해서는 유아학비 잔액으로 집행 가능(유치원 지도·점검 시 확인)

- **(보육료) 보육 교직원 인건비, 교재교구비, 급·간식비, 냉·난방비, 관리·운영비** 등 **보육**에 **필요**한 **비용**

○ **(지원기간)** 1년(’26. 3. 1. ~ ’27. 2. 28.)

○ **(지원기준)** 유아학비·보육료 5만원 추가지원 및 양육수당 간 변경 지원에 관한 기준은 유아학비와 동일한 지원 기준을 적용

○ **(지원금 산정)** 산정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, 입학일, 출결, 학적 중단 등은 유아학비 지원 기준을 적용

○ **(정산)** 유아별 **입학·퇴원** 및 **출결상황 등**을 **반영**하여 **정산 실시**

- 사업종료 후 **'27.3월 말**까지 **지자체 교부금 정산결과**를 **포함**한 유아학비·보육료 5만원 추가지원금 **정산결과**를 **교육부**에 **제출**

○ **(집행잔액)**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**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을 차년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반영**

□ 보육료 관련 지자체 예산 지원 협조 (어린이집 예산)

○ **(교부방법)** 지자체에서 시·도교육청으로 보육료 예산 신청(지원인원 및 지원 금액 등 포함) 후, **시도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예산 교부**

○ **(교부액)** 어린이집에 다니는 3~5세 유아에 대해 월 50,000원의 보육료 추가지원금을 지자체에 지원

○ **(교부시기) 분기별**(3월, 6월, 9월, 12월)

※ 정산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시·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교부 시기 조정 가능

○ **(정산)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** 매분기 종료 후('26년 4월·7월·10월·'27년 1월) 20일까지 **시도교육청**으로 **제출**

※ 정산 시기는 시·도교육청과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월별 또는 분기별 가능

※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 별첨 필수

Ⅴ. 행정(협조) 사항

□ 시도교육청

○ **(공통) 시도교육청**과 **지자체 간** 유기적인 **협조체제 구축·운영**

○ **자체 세부 지원계획 수립** 및 **상시 지도·점검체계 구축·운영**

※ 타 복지 서비스와의 중복 지원 및 부실한 출결 관리로 인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아 입·퇴원 및 출결 관리 등에 대한 지도·감독 강화

○ **학부모 설명회 개최 등**을 통해 지원 자격 등 **홍보 강화**

❖ 설명회 주요 안내사항 ❖

- 유아학비 지원 개요 : 대상, 지원 단가, 신청·지원 절차 등 **(소급지원 불가)**
- 무상교육 기간(3년) 종료 시 유아학비 지원 중단 등
- 타 복지서비스(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)로 변경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자격 변경 신청 필요(신청 누락시 **자부담이 발생**하며 **소급지원 불가**)

※ 설명회 등에 불참하여 안내받지 못한 경우, 유선 등으로 **반드시 개별 안내**

○ **입학(신규 신청)** 또는 타 복지서비스로 **변경 신청 시**(보육료·양육수당 →유아학비) **주민센터 방문** 또는 **온라인 신청**하도록 **적극 안내**

- 보호자의 유아학비 **신청 지연** 및 **보육료 등으로 잘못 신청**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**입학 시 유아학비 지원 신청 유무 반드시 확인·안내**
- **저소득층 유아학비**는 **유아학비 지원 자격**을 **전제**로 지원하므로, 타 복지서비스(보육료, 양육수당 등) 신청으로 **유아학비 지원 자격**을 **상실**하면 **지원**이 **중단됨**을 사전 설명

○ 유치원에 다니는 **모든 유아**는 '유아학비 지원시스템'에 **대상자 등록·관리**

- '**사회보장정보시스템**(행복e음)' **자격 미수신 유아**의 경우 **일반등록**(예 : 자격 미수신자*, 무상교육 기간 초과자 등), **직권등록**(예: 후견인 보호자 등)으로 **관리 가능**

* 단, 일반등록 유아 중 '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' 자격 미수신자의 경우 학부모에게 유아학비 신청 여부 확인을 반드시 실시(SMS 발송 기능 등 활용)

○ **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**에 따라 '유아학비지원시스템'에 등록하는 모든 유아·보호자에 대해 **개인정보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의 의무화**

※ [붙임4] 관련. 단, 유아의 보호자가 동의서를 기 제출한 경우 생략

○ 정부지원금 인상 확정 전 심의 또는 결정된 **유치원별 원비**가 **정부지원금**보다 **적은 경우**에도 **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가능**

※ [예시] 유치원 원비 34만원 < 정부지원금 35만원 ⇒ 35만원 전액 지원 가능

□ 지방자치단체

○ **(공통) 시도 교육청**과 **지자체간** 유기적인 **협조체제 구축・운영**

○ **유아학비**(저소득층 유아학비 포함) **신청 접수** 및 **자격 결정・중지 업무** 관련, 시도 및 시·군·구 **보육담당 부서**의 **적극 협조 요청**

- 접수 시 유아의 보호자에게 유아의 **유치원 입학・학적중단 여부 및 입학・학적중단 예정일 확인 등 실시**하여 자격 책정 오류 방지

※ 학적중단 : 자퇴, 퇴학, 수료 및 졸업 후 가정양육 전환

- **신속한 자격 결정·통지**로 원활한 유아학비 청구·정산 업무 협조

※ '유아학비지원시스템' 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자격 미수신 유아를 대상으로 문자 발송

- 개정 「유아교육법 시행규칙*」에 따른 전국 신청건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, **주소지 관할 외 지역**에서 유아학비 지원 **신청서 접수 시** 유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**즉시 이관 협조 요청**

*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개정('20.2.27) : 유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라도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 신청 가능

- 유아학비 부정수급 사전 차단을 위해 **31일 이상**(출국일 포함) **해외 체류 유아**에 대해 **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즉시 처리**

※ 자격 중지 처리 지연으로 유아학비 청구·정산 시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, **자격 중지 변동 알림 시 즉시 조치 협조 요청**

○ **신청 및 통보 절차 등 학부모 안내 요청 사항**

구분	내 용
신청 방법	■ 신규.변경(상실포함)대상자 : **신청** ■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연계 자격보유자(유아학비 자격 기(旣) 보유자) : **신청제외** ■ 저소득층 유아학비 자격 기(旣) 보유자 : **신청제외**
신청 서류	■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 [붙임5] ■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 확인(신분증 등) ■ (필요시*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[붙임6] * 유아의 사실상 보호자가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
자격 통보	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(변경, 중지, 상실 등) 안내 ■ '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' → '유아학비지원시스템'으로 자격정보 등 연계

□ 단위 유치원

○ ‘유아학비지원시스템’에서 등록하는 **유아 정보***는 **유아의 생활기록부** 및 **방과후 과정 운영사항과 동일**하게 등록

*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별, 도로명 주소, 도로명 상세주소, 방과후 과정 여부, 보호자명, 보호자생년월일, 보호자관계, 교육과정(학급구분, 학급명), 방과후 과정(학급구분, 학급명), 입학일, 방과후 과정 시작일, 방과후 과정 종료일

○ 유치원 유아의 학적중단(자퇴, 퇴학, 수료 및 졸업 후 가정양육 전환) 시 반드시 학부모에게 **보육료** 또는 **가정 양육수당 신청** 안내 필요(“미신청시 보육료·양육수당을 지원 받을수 없으며, **소급지원 불가함”을** **반드시 안내**)

* 유아의 학적중단시 자격 변경 신청 누락으로 인한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

○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는 **해당 학년도 내 전액 집행 원칙**

- **유치원**은 **회계연도 독립의 원칙**에 따라 **당해 연도 유아학비** 및 **방과후 과정비**가 **불용**되거나 **이월금**이 **발생**하지 **않도록 집행 철저**

※「사립학교법」 제32조의4 및 제51조에 따라 관할청은 유치원의 이월금이 재정 규모에 비해 과다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

❖ 「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('23.7.3., 교육부)」 26페이지 ❖

■ 공통과정지원금 및 방과후과정지원금은 해당 학년도 내 전액 집행 원칙

■ 공통과정지원금 및 방과후과정지원금 집행 잔액 발생 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및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학년도 유아의 직접 교육경비로 편성·우선 사용

■ 과도한 집행 잔액이 남은 유치원은 다음 학년도 원비 인상률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집행 잔액의 연례적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 권고

- 집행 잔액 발생 시, **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** 및 **학부모 의견 수렴**을 거쳐 **다음 학년도 유아의 직접 교육경비***로 **편성·우선 사용**

* (예시) 교재교구비 및 급·간식비 등 유아가 직접 혜택받는 항목으로 편성 가능, 교직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간접비로 사용 불가

붙임 1 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(유치원생기부작성및관리지침 개정안 반영)

□ 다음의 경우는 교육일수에 포함한다.

1. **지진, 폭우, 폭설, 폭풍,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**(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), **미세먼지*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**

 * 등교시간대(오전 8~9시) 거주지 또는 유치원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(나쁨 이상)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(전화, 문자 등) 하고 출석하지 못한 경우

2. **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**

 ※ 감염병 상황으로 유치원 시설 폐쇄 또는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포함(단, 유치원 자체 결정에 따라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미포함)

3. **원장의 허가를 받아 '유치원을 대표한 경기·경연대회 참가, 교외체험학습*'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**(연간 최대 30일**까지 인정)

 *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은 정규 수업일에만 신청 가능

4. **「학교보건법」 제8조에 따른 '등교 중지'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**

5. **다음의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**

구분	대상	일수
결혼	○ 형제, 자매, 부, 모	1
입양	○ 유아 본인	20
사망	○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	5
	○ 증조부모, 외증조부모 ○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	3
	○ 부모의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	1

※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.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.

6. **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**(예: 부모의 출산)

7. **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된 원격수업 참여 일수**

 * 원격수업은 정규 수업일에만 운영 가능

8. **질병·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(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)** ※【붙임2】 결석계(질병 결석 신고서) 징수·보관

□ 유의사항

○ 학부모는 유아 교육일수 인정특례 각호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, 입원확인서, 약제비 영수증, 보험금 청구서, 참가 신청서, 결석계 등 **객관적 증빙자료를 반드시 유치원에 제출**해야 함

○ 소관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점검 시 **출석부**와 **증빙서류 대조 필수**

○ 수업일수에 포함되는 교육과정 시 위의 특례에 따라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경우, 당일 방과후 과정은 동일 사유로 인정 가능

○ 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최대 인정일수에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음(예: 금요일·월요일 질병결석 시 토·일요일은 관계없이 8호 사유로 2일 인정)

○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 시 3호(교외체험학습)·7호 외 사유만 적용 가능하며, 8호는 연간 인정 가능한 범위(30일) 내에서 적용 가능

○ 제6호를 사유로 교육일수를 인정받는 경우, 반드시 '부득이한 사유'임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

붙임 2 질병 결석 신고서 양식 ※ 2025 유치원생활기록부기재요령

결 석 계

담임	교무	원감	원장

반 :

성 명 :

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석(하고자, 하였으므로) 보호자(법정대리인)가 서명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1. 결석사유 :
2. 결석기간 : 월 일부터
 월 일까지 ()일간

■ **결석사유에 따른 증명서류**

1.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()
2. 병원 처방전 또는 약 봉투 ()
3. 기타 ()

* 증빙 서류는 확인용임

■ **확인 후 처리 방법 :** 회수(), 파쇄요청()

☐ **개인정보 수집·이용 사항 고지**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

개인정보 처리목적	개인정보 항목	수집 근거
결석 업무 처리	반, 성명, 보호자 성명,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*	「유아교육법」 제14조

*의사 소견서,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,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

20 년 월 일

보호자(법정대리인) 성명: (서명 또는 인)

○○유치원장 귀하

※ 결재란은 예시이며, 유치원 등에 정해진 위임전결규정으로 대신할 수 있음

붙임 3 **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 안내(예시)**

2026년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하세요(예시)

사립유치원에 다니는 **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**하오니,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**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**해주시기 바랍니다.

현재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도,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

▣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
구 분	내 용
지원대상	**유아학비 지원 대상**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**유아**가 **한부모 가정 아동**이거나 **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**가 **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** 또는 **차상위 대상 자격**을 **보유**한 경우
신청방법	방문신청
	가까운 **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** 또는 **온라인(복지로: www.bokjiro.go.kr)**을 통해 **신청**
제출서류	신청서, 신분증,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

▣ 지원 내용

대상	지원금액	비고
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	월 최대 20만원	● 학부모부담금(교육과정비+방과후과정비+특성화활동비)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
▣ 지원절차

보호자 신청/접수	⇒	**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 확인** (유치원)	⇒	**유아학비 신청**	⇒	**유아학비 지원**
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		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↔ 유아학비지원 시스템(e-유치원) 자료 연계		유치원 → 교육청		교육청 → 유치원

더 궁금하신 사항은 (교무실) 02-123-4567, (행정실) 02-123-4568, (에듀콜센터) 1544-0079~5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.

2026. . .

○○○○유치원장

붙임 4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

유아학비지원시스템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. 개인정보보호법 및 유아교육법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·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.

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다루는 만 14세 미만의 학생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, 학부모(법정대리인)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. 개인정보보호법(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)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아학비지원시스템 홈페이지 하단의 [개인정보 처리방침]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아래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을 확인하신 후 동의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- 절 취 선 -

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예시)

☐ **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**

| 항목 | 수집·이용 목적 | 보유·이용 기간 |
|---|---|---|
| 유아성명, 유아주소, 학부모 성명, 학부모 주소, 학부모 전화번호, 학부모 핸드폰번호, 학부모 e-mail주소 |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유아학비지원시스템(유아 나이스 및 e-유치원) 등록 및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자료연계 | **유아 최종 학적중단 후 5년** |

※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유아학비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**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?** ☐ **동의** ☐ **미동의**

☐ **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**

| 제공받는 기관 | 제공 항목 | 제공 목적 | 보유·이용 기간 |
|---|---|---|---|
| **교육부 및 시도 교육(지원)청, 한국교육학술정보원, 보건복지부(사회복지통합망)** | 유아성명, 유아주소, 학부모 성명, 학부모주소, 학부모 전화번호, 학부모 핸드폰번호, 학부모 e-mail주소 | **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유아학비지원시스템 (유아 나이스 및 e-유치원) 등록 및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자료연계** | **유아 최종 학적중단 후 5년** |

※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유아학비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**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** ☐ **동의** ☐ **미동의**

☐ **기타 고지 사항**

| 개인정보 처리 목적 | 개인정보 항목 | 근거 |
|---|---|---|
|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유아학비지원시스템(유아 나이스 및 e-유치원) 등록 및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자료연계 | 주민등록번호(유아, 학부모) |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3 |

20 . . .

유아 성명 :
학부모(법정대리인) 성명 : (인)
연 락 처 :
관 계 :

○○ 유치원장 귀하

※ 수집된 개인 정보는 법에 의거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며, 목적 달성 및 보유기간이 경과 시 즉시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5 유아학비 지원 신청 양식

■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[별지 제1호의4서식] <개정 2026.1.1.> (3쪽 중 1쪽)

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
처리기간 : 14일
(첫만남이용권, 장애인활동지원,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는 30일)

| | |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신청인 | 성명 | | 주민등록번호
(외국인등록번호
전산관리번호) | | 세대주와의 관계 | | 전화번호 | |
| | 주소 | | | | | | 휴대전화 | |
| | | | | | | | 전자우편 | |

| 가족사항 | 세대주와의 관계 | 성 명 | 주민등록번호
(외국인등록번호
전산관리번호) | 동거여부 | 건강상태
(장애/질병) | 직장명 | 전화번호 (집/직장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
※ 배우자 관계 ([] 법률혼 [] 사실혼 [] 사실상 이혼)

| 본인부담금 환급계좌[1] |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| 성 명 | 금융기관명 | 계좌번호 | 예금주 | 비고(사유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 |

| 제출처 | 사회보장급여 내용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읍면동 주민센터 | []보육료지원
· 유아학비지원
* 부모급여(보육료) 지원 포함 | | 지원대상자 | 신청구분 | |
| | | | | [] 어린이집(0~2세) 기본([]장애 []다문화) [] 어린이집(0~2세) 연장 [] 어린이집 방과후
[] 어린이집(3~5세)([]장애 []다문화) [] 장애아 보육료(6~12세)
[] 유치원 유아학비(3~5세)([]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) | |
| | | | | [] 어린이집(0~2세) 기본([]장애 []다문화) [] 어린이집(0~2세) 연장 [] 어린이집 방과후
[] 어린이집(3~5세)([]장애 []다문화) [] 장애아 보육료(6~12세)
[] 유치원 유아학비(3~5세)([]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) | |
| | | | | [] 어린이집(0~2세) 기본([]장애 []다문화) [] 어린이집(0~2세) 연장 [] 어린이집 방과후
[] 어린이집(3~5세)([]장애 []다문화) [] 장애아 보육료(6~12세)
[] 유치원 유아학비(3~5세)([]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) | |
| | | | * 어린이집(0-2세) 연장보육자격을 신청한 경우라도,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(0-2세)기본보육 자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* 0, 1세 아동은 부모급여(보육료) 자격으로, 어린이집(0-2세)로 신청하면 됩니다.
*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, 디딤씨앗계좌(CDA)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| | | |
| | []가사간병방문지원 | | 지원대상자 | | 서비스시간 |
| | | | 신청요건(1개 선택) | | |
| | | | []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[] 중증질환자 [] 희귀난치성질환자 [] 소년소녀가정
[] 조손가정 []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 []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| | [] 월 24시간
[] 월 27시간 |
| | | | []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| | [] 월 40시간 |
| | [] 장애아동 가족지원 | 발달재활 서비스 | 지원대상자 | 장애유형 | [] 뇌병변장애 [] 청각장애 [] 시각장애 [] 언어장애
[] 지적장애 [] 자폐성장애 [] 미등록 (9세 미만) |
| | | | 장애정도 | []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[]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[] 미등록 | |
| | | | 필요서비스
(중복 체크가능) | [] 언어재활 [] 청능재활 [] 미술심리재활 [] 음악재활 [] 행동재활
[] 놀이심리재활 [] 재활심리 [] 감각발달재활 [] 운동발달재활 [] 심리운동
[] 기타() | |
| | | 언어발달 지원 (비장애아동) | 지원대상자 | | |
| | | | 필요서비스
(중복 체크가능) | [] 언어발달진단 [] 언어재활 [] 기타 () | |
| | | | 장애유형
(부모 또는 조부모) | [] 뇌병변장애 [] 청각장애 [] 시각장애 [] 언어장애 [] 지적장애
[] 자폐성장애 | |
| | [] 발달장애인 지원 |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| 지원대상자 | 자녀와의 관계 | [] 부 [] 모 [] 기타() |
| | | | 장애 유형 및 정도 | 장애유형 | [] 지적장애
[] 자폐성장애
[] 미등록(영유아) |
| | | | | 장애 정도 | []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[]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|
| | |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지원 | 장애 유형 및 정도 | 장애유형 | [] 지적장애
[] 자폐성장애 |
| | | | | 장애 정도 | []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[]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|
| | | | 지원유형 | [] 주간활동서비스 ([] 기본형 [] 확장형)
※ 확장형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.
[] 방과후활동서비스 | |

1) 부모급여(차액) 지급계좌로도 활용됩니다. 0,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(보육료) 자격 신청 시 부모급여(차액)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좌정보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[]지역사회 서비스 | 지원대상자 | | 서비스명 | |
| | | 지원대상자 | | 서비스명 | |
| | []일상돌봄 서비스 | 지원대상자 | | | |
| | | 신청요건 (1개 선택) | [] 돌봄 필요 청년·중장년
[] 가족돌봄청년
[]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| | |
| | | 지원 유형 | 서비스 유형 (중복체크 가능) | 서비스명 | |
| | | | [] 기본서비스 | | |
| | | | [] 특화서비스 | | |
| | | ※ 기본서비스 유형별 특화서비스 이용가능 개수 : 1개(A형), 2개(B형), 선택 불가(C형)
※ 기본서비스 미이용시 특화서비스 이용가능 개수: 2개(D형) | | | |
| | []긴급돌봄지원 | 지원대상자 | | | |
| | | 지원 유형 (중복체크 가능) | [] 기본돌봄 서비스
[] 방문목욕 서비스 | | |
| | | 신청 사유 (중복체크 가능) | [] 갑작스러운 질병·부상 등으로 필요한 경우
[]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필요한 경우
[] 타 돌봄서비스 신청 후 대기 중인 경우
[] 재난피해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
[] 기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| | |
| | []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| 지원대상자 | | 지원신청 |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, 주양육자 신청가능 |
| | | 지원대상자 | | | |
| | [] 장애인활동지원 | 지원대상자 | | | |
| | | 긴급활동지원 | [] 해당 (※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) | | |
| | | 활동지원급여 | 신청유형 | [] 신규신청 [] 변경신청 [] 갱신신청 [] 노인장기요양전환자 지원 | |
| | | | 변경신청 사유 (※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) | [] 장애상태의 변화 | [] 학교생활 |
| | | | | [] 직장생활 | [] 취약가구 |
| | | | | [] 독거(1인)가구 (19세 이상) | [] 거주지 이전 |
| | | | | []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| [] 조손가정 (19세 미만) |
| | | | | [] 한부모가정 (19세 미만) | [] 기타 |
| | | 특별지원급여 | []출산 []자립준비 []보호자일시부재([]결혼 []사망 []출산 []입원 []지역사회보호자)
(※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) | | |
| | []첫만남이용권 | 지원대상자 | | 출생정보 | [] 국외출생
[] 복수국적 |
| | | | | 출생순위 | [] 첫째아
[] 둘째아 이상 |
| | | 지급방식 | [] 바우처(원칙) [] 현금(시설보호 아동 등) [] 현금(보호자명의 계좌) | | |
| | | 카드정보 (국민행복카드) | 보호자(카드 보유자) | | |
| | | | [] BC(은행) [] 삼성 [] 롯데 [] KB국민(은행) [] 신한 | | |
| | | | ※ 유의사항
- 신규신청자의 경우, 발급 희망 카드사 및 회원 은행사(BC, KB카드를 선택한 경우)를 선택합니다
-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, 해당 카드사를 선택합니다. | | |
| | []정신건강 심리 상담 바우처사업 | 지원대상자 | | | |
| | | 지원 유형 | [] 1급 유형 [] 2급 유형 | | |
| | | 의뢰경로 (1개 선택) | 기관에서 심리상담 필요성 인정 | [] 정신건강복지센터 [] 대학교상담센터
[] 청소년상담복지센터 [] Wee센터/Wee클래스
[]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수행기관
[] 정신의료기관 [] 기타 기관 | |
| | | | 그 외 | []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건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 우울 확인
[]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[] 재난피해자 | |
| 보건소 | []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| 지원대상자 | | 출산(예정)일 | 년 월 일 |
| | | 지원 유형 | [] 단태아([] 첫째아 [] 둘째아 [] 셋째아 이상),
[] 쌍태아 /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+단태아([] 인력1명 [] 인력2명)
[] 삼태아 /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+쌍태아 ([] 인력2명 [] 인력3명)
[] 사태아 이상 /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+삼태아 이상 ([] 인력2명 [] 인력4명) | | |
| | | 신청요건 | 기본 지원대상 | [] 자격확인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)
[] 소득기준 이하 | |
| | | | 예외 지원 대상 (해당자만) | []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[]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
[]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[]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[] 새터민 산모
[] 결혼이민 가정 [] 미혼모 산모 []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
[] 분만 취약지 산모 [] 미숙아 출산 산모 [] 기타(소득기준 완화 등) | |
| | | 서비스 제공 장소 | [] 자택 [] 기타 | | |
| 보건소·주민센터 | []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| 지원대상자 | | | |
| | | 지원 유형 (중복 체크 가능, 조제분유는 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 가능) | 기본지원대상 | [] 기저귀([] 국기초 [] 차상위 [] 한부모 [] 기타)
[] 조제분유([] 산모의 사망·질병 []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[] 기타) | |
| | | | 예외지원대상 (지자체자체 사업) | [] 기저귀([] 국기초 [] 차상위 [] 한부모 [] 기타)
[] 조제분유([] 산모의 사망·질병 []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[] 기타) | |

|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| 확인 (√ 체크) |
|---|---|
| **1.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**
□ 개인정보 활용 목적
동 신청서를 접수한 **보장기관의 장이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.**
□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
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, 소득·재산·근로능력·취업상태에 관한 정보,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,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·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(기초생활보장과 초중고 교육비지원은 본인, 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,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,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,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), 금융·국세·지방세, 토지·건물·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·출입국·병무·보훈급여·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**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**
□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
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**5년간 보유**하고**(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**, 그 기간이 경과하면 **파기함을 고지합니다.**
□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
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 시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. | [] |

| 유 의 사 항 | 확인 (√ 체크) |
|---|---|
| 1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,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관계 법률에 따라 **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**,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,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**징역, 벌금,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**. | [] |
| 2.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,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,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| [] |
| 3.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, 세대원, 소득·재산상태, 근로능력, 수급이력 등이 **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** 해당 **급여는 환수**될 수 있으며, 관계 법률에 따라 **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**을 받을 수 있습니다. | [] |
| 4.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·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 | [] |

| 추가제출 서류 | |
|---|---|
| | 1. 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*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,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2.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3. 어린이집(0~2세) 연장보육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장보육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(해당자에 한함)
4. 건강 진단서(해당자에 한함)
5.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(소견서),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,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,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
6. 첫만남이용권 지원신청 시 시설입소아동,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, 복수국적자, 난민 인정자, 보호자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및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
7.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의 경우, 신청요건에 따라 아래의 서류
-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 클래스 등의 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: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)
-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의뢰된 경우 :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」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)
-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: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)
- 국가 정신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 우울이 확인된 경우 :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(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시)
-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: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,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 보호확인서
8.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의 경우, ①의사진단서, 소견서,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등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, ②돌봄 제공자 부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
9.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의 경우,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, 입원(퇴원)확인서, 주돌봄자의 사망신고서 등 긴급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|

본인(대리신청인 포함)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,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 신청인[2])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과의 관계 : (대리 신청의 경우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2) 가족, 친족(8촌이내의 혈족, 4촌이내의 인척),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(후견인) 등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붙임 6 (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) **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 안내**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

| | |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구 분 | 기초수급자 | ☐ 기초생활수급자 | | | | | | |
| | 차상위계층 | 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
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☐ 장애인연금수급자(차상위 부가급여)
☐ 장애(아동)수당수급자 ☐ 자활대상자 | | | | | | |
| | 한부모 가족 | ☐ 한부모가정 아동 | | | | | | |
| | 유아 성명 | | | | | | | |
| 정보제공 동의자 | 관계 | 성명 | 주민등록 번 호 | 주 소 | 전화번호 | 동의여부 | | 서명 |
| | | | | | | 동의 | 부동의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
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·관리를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, 보건복지부·여성가족부에 제공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☐ **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**

| 항목 | 수집·이용 목적 | 보유·이용 기간 |
|---|---|---|
| 관계,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|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·관리
※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7조 및 제19조 | **작성일로부터 5년** |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**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?** ☐ **동의** ☐ **미동의**

☐ **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**

| 제공받는 기관 | 제공 항목 | 제공 목적 | 보유·이용 기간 |
|---|---|---|---|
| **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, 교육부, 교육청** | 관계,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| **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관리**
※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7조 및 제19조 | **작성일로부터 5년** |

※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**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** ☐ **동의** ☐ **미동의**

☐ **기타 고지 사항**

| 개인정보 처리 목적 | 개인정보 항목 | 근거 |
|---|---|---|
|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·관리
※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제19조 | 주민등록번호 |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|

20 . . .

참고1 학적처리 사용 용어[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1]

| 사용 용어 | 용어 설명 |
|---|---|
| **입학** |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기간 중 최초로 유치원에 들어감 |
| **재학** | 당해 유치원의 학생 신분(학적)을 보유함 |
| **재입학** | 유치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우리 유치원에 다시 들어옴(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불가) |
| **편입학** | 유치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다른 유치원에 다시 들어감 |
| **전입학** | 다른 유치원 유아가 우리 유치원 재학생이 됨 |
| **전출** | 다른 유치원으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유치원으로 학적을 옮김 |
| **휴학** | 질병 등 사유에 의해 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(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불가) |
| **면제** |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제19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의무를 면함(특수교육대상유아에 해당) |
| **유예** |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(특수교육대상유아에 해당하며, 유치원규칙에 따라 '정원외학적관리' 할 수 있음) |
| **복학** | 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유치원에 들어옴 |
| **재취학** |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'면제, 유예, 정원외학적관리' 중인 자(의무교육을 중단한 자)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다니게 됨(특수교육대상유아에 해당) |
| **자퇴** | 전출, 휴학 이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우리 유치원에서의 학적(재학생의 신분)을 중단함(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불가) |
| **퇴학** | 유치원규칙에 의해 학적(재학생의 신분)을 박탈함(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불가) |
| **수료** | 유치원규칙에 따라 해당 연령의 교육과정을 이수함 |
| **졸업** | 유치원규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침 |

참고2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별 대응활동

□ 위기경보수준에 따른 유치원의 대응

| 구분 | 위기 유형 | | 주요 대응 활동 |
|---|---|---|---|
| | 해외 신종 감염병 | 국내 원인불명·재출현 감염병 | |
| 관심 (Blue) |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| 국내 원인불명·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| · 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
· 환자 발생 감시체계 운영 |
| 주의 (Yellow) |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| 국내 원인불명·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| · 교육연속성계획(ECP) 수립 (환자 발생 지역)
· 환자 발생 감시체계 운영
· 환자 발생 지역의 전파 차단을 위한 예방 활동 |
| 경계 (Orange) |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| 국내 원인불명·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| · 교육연속성계획(ECP) 수립 (환자 발생 지역)
· 환자 발생 현황 파악
· 환자 발생 시 대응
· 위기 소통채널 운영
· 각종 행사 연기 또는 취소 |
| 심각 (Red) |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| 국내 원인불명·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| · 교육연속성계획(ECP) 수립 (전체 지역)
· 환자 발생 현황 파악 및 보고
· 환자 발생 시 대응
· 휴업 및 휴원 검토
· 위기 소통채널 강화 |

※「학교 감염병 예방·위기대응 매뉴얼(유치원용)」(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-1505, 2024.4.8.)

□ 위기경보수준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의 대응

| 구분 | 위기 유형 | | 주요 대응 활동 |
|---|---|---|---|
| | 해외 신종 감염병 | 국내 원인불명·재출현 감염병 | |
| 관심 (Blue) |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| 국내 원인불명·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| · 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
· 구체적 방안 검토
· 환자 발생 감시체계 운영
· 각종 예방활동
· 방역당국과의 협조체계 점검
·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에 감염병 대응 현황(방역물품 등)을 파악
· 모의훈련 실시
※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(질병관리청) |
| 주의 (Yellow) |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| 국내 원인불명·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| · 감염병 대응 대책반 구성·운영
· 환자 발생 감시체계 운영
· 감염병 예방 정보 제공
· 위기 소통채널 확보
※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(질병관리청) |
| 경계 (Orange) |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| 국내 원인불명·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| · 감염병 대응 대책반 확대 운영
· 감시 강화 지역 범위 및 대응 방안 결정
· 감염병 대응 자원(방역물품 등) 보급 및 확충
· 환자 발생 감시체계 강화 운영
· 휴업 및 휴교 검토
· 학교 교육과정(현장체험학습 등) 조정
※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(보건복지부) |
| 심각 (Red) |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| 국내 원인불명·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| · 감시 및 대응 강화
· 감염병 관리 현황 모니터링 (예방교육, 위생관리, 방역 등)
· 「집단 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지침」 준수
· 시도교육청 대책반 확대 운영
· 감염병 협의체(필요시) 협력 강화
· 환자 발생 감시체계 강화 운영
· 휴업 및 휴교 검토
· 학교 교육과정(현장체험학습 등) 조정 – 체험 및 단체활동 금지 및 자제
※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(행정안전부) |

※「학교 감염병 예방·위기대응 매뉴얼(유치원용)」(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-1505, 2024.4.8.)

참고3 관련 법령

<관련법령>

가. 유아교육법

제24조(무상교육)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(無償)으로 실시하되,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,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7조(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나. 유아교육법 시행령

제29조(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)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·보육과정(이하 "공통과정"이라 한다)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.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유치원 2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

3.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

②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가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본다.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

제33조(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)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.

1. 교육환경 개선비 2. 인건비 3. 교재·교구비

4.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<관련규정 :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[별표1] 비고 19>

19.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각 회계연도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)을 제외하고 산정한다. 다만, 「유아교육법」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외에 **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**한 경우 기준재정수요액은 1인당 추가 지원 금액에 측정항목 제6호가목(유아교육비·보육료 지원) 1)을 곱하여 산정한다.